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
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
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규정 개선(안 제6조)

-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도입 근거 마련

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2항)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 검증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